

대전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가단1093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박지영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9. 28.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0. ‘C’이라는 제조업체(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D와 사이에 D에게 가설재(유로폼)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의 대표이사 F는 D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음성군법원 2019가소2615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2018. 8월부터 2019. 3. 20.까지의 임대료 26,334,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20나491호)에서 2020. 9. 17. ‘피고(D)는 원고에게 2020. 12. 31.까지 1,000만원을 지급하되, 지체시 미지급금액에 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결정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임대료 채무’라 한다).

다. 피고는 자본금을 2억 900만원으로 하여 2018. 7. 24.경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기인이자 주주로는 G, H, I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D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료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C을 폐업하고 피고를 설립하였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이 사건 임대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E의 대표이사 F는 E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임대료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E의 이 사건 임대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등 참조).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의 명칭이 C과 유사하고, D는 2018. 11. 29.부터 2019. 3. 12.까지, D의 딸인 G는 2019. 3. 12.부터 현재까지 각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②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 2억

900만원 중 G 명의로 출연된 1억원은 D가 G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충당된 사실, ③ 피고와 E은 그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본점 소재지도 모두 ‘대전 유성구 J, K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동일한 사실, ④ C의 직원이었던 L과 E의 직원이었던 M, N, G 등은 피고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 중 1억 900만원은 H, I이 출연하였는바, 위 H, I이 D, F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거나 H, I이 출연한 위 자본금을 D나 E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E의 본점 소재지이자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 설립 전에는 O의 소유였다가 피고가 설립 직후 이를 O로부터 매수함으로써 피고의 자산에 포함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D나 E의 자산이 소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와 E 및 피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피고의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D 또는 E과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D 또는 E의 이 사건 임대료채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